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정보의 표시의무〉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13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정보의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가상정보의 표시의무(안 제43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 안 제43조의2에 따른 표시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전시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제3항).
- 안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4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의2(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생략)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게재 또는 ----- ----- ----- --- 1.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④ ~ ⑥ (생략)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u>매체물</u> 2.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 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 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 3. 제43조의2에 따른 표시방법 을 지키지 아니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 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 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

현행	개정안
4의2. ~ 4의4. (생략)	<u>하지 아니한 자</u> 4의3. ~ 4의5. (현행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4까지와 같음)
5. ~ 25. (생략)	5.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2023년 3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제작·확산되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사진·영상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미국 행정부는 2023년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가 검증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인증 및 워터마크 지침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구글, 오픈AI 등 7개 기업¹⁾은 인공지능 기술로 작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이용자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음²⁾.
- 또한 유럽연합은 2024년 3월 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생성·조작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배포자가 해당 콘텐츠가 딥페이크에

1)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픈AI, 인플렉션, 앤스로픽

2) 이승환,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23-15호.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³⁾,

인공지능 생성물 전반에 대한 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없음.

- 개정안은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정보가 이용자에게 사실로 오인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실제 의무 이행이 가능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⁴⁾, 개정안에 따른 표시의무자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경우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직접 정보를 생성한 자가 아닌 단순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의무 이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

4)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욱 엄격하게 요구됨(89헌가104).

- 개정안은 정보제공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담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만 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의 문언만으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표시의무의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가령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 영상을 일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단순 보정한 경우까지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 세계적 입법동향, 인공지능 생성정보가 사실로 오인됨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 ① 음향·이미지·영상뿐만 아니라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의 글·문자에도 표시의무를 확대하되,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범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의무의 예외사항(활용 범위가 경미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정보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자로 표시의무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③ 정보제공자가 표시의무를 인지하고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생성단계에서 표시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
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 정보통신망법에 ‘인공지능 기술’이 정
의되어 있지 않아 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을 예측하
기 곤란하여 수범자의 혼란이 우려되며,

② 정보제공자에 개인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에서 개인에게 직접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을 제출함⁵⁾.

○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규제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며,

② 표시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규제 예측성이 낮고 과도한 포괄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③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장르별 제작 방식과 인공지능
의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기구(KISO)는 ① 제3자가 생산한 정보를 단순히
공유하는 자의 경우 인공지능 생성정보임을 인식하지 못할 우
려가 있음에도 고의 없이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며,

5) 글로벌 입법 동향도 표시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② 표시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이나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점차 다양한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 생성정보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명확히 규율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②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규율 법체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위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③ 정보제공자의 표시의무 이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표시의무가 산업적·현실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켜 인공지능 산업 자체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관련

○ 첫째,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인공지능 정보에 대한 삭제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현행 제44조의2 제3항은 정보통신망에 동법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이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삭제의 대상에 표시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 또는 심의기관의 결정·확인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것이므로⁶⁾,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이에 대한 광고 정보를 삭제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삭제대상 정보인지 판단할 부담이 비교적 적음.
- 반면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경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정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삭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둘째, 인공지능 생성정보 삭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임.

6) 「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생성정보 중에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 악의적인 목적이 없거나, 타인의 명예 등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정보도 있음에도,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생성정보에 대한 판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삭제의무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 생성정보로 의심되는 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임.
- 한편,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안들⁷⁾에 인공지능 생성정보의 표시의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해당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 ① 인공지능 생성정보를 모두 탐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반 정보를 발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7) 의안번호 제2200053호(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43호(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58호(민형배의원 대표발의)

② 불법성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 삭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직권표시, 접속제한 또는 이용정지 등 삭제 외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③ 정보 유통량, 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시의무의 적용 대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위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생성정보에는 인공지능의 순수 산출물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방식 및 인간의 창작적 관여 정도에 따라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표시의무를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판별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삭제의무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